

3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채권시장 조성제도 개선 및 원금이자분리채권 관리 프로세스 정비)

나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회원의 복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명시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4/10/29 개정 · 2024/11/4)

1) 개정 이유

□ 국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채권시장 조성제도를 개선하고,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조성이효도 평가 도입(제99조의10, 제99조의11, 별표 4)

— 조성이효가 제출실적 배점을 축소(30점→20점)하고 조성이효가 유지 시간분포에 따른 조성이효가 유효도(10점) 평가 항목을 신설

- ① 유지시간 가중(유지시간별 0~3 가중치 부여) 조성이효가 건수 / 조성이효가 건수
- ② 타 조성회원과의 상대평가가 아닌 개별 조성회원의 유효도를 절대평가

— 조성이효가 유효도 1점(10%) 미만시 조성대가 지급 제한

□ 장기물 조성이효가 시간 확대 및 거래실적 평가 변경(별표 4)

— 국고채 30년물의 조성이효가 제출시간을 다른 만기종목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

- (오전) 9시 ~ 12시 중 2시간 → 9시 ~ 12시 중 2.5시간
- (오후) 13시 30분 ~ 15시 30분 중 1시간 → 13시 ~ 15시 30분 중 2시간

— 호가거래실적(70점) 평가시 5년물 이상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국제시장 조성계좌를 통한 거래실적을 별도 가산

[거래실적 평가시 만기별 가중치(안, 배)]

2년	3년	5년	10년	20년	30년	기타(물가채 · 50년물 · 원금이자분리채)
1.0	1.0	1.5	1.5	2.0	2.0	2.0

* 국제시장 접속인프라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거래실적 평가 우대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조성회원 관리제도 정비(제99조의3 제6항)

- 조성호가 실적 미달사에 대한 조성회원 지정취소 미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정하여 조성제도의 안정적·효율적 운영을 도모
 - (기존) 금융시장 급변 등 시장관리상 필요시
 - (개정) 급격한 유동성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, 금융시장 급변·전산장애 등으로 조성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, 기재부장관이 전문딜러 등으로 지정한 경우 등

□ 조성종목 지정방식 개선(제79조의2, 제99조의5, 별표 2의6)

-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종목 지정시기를 만기월(3·6·9·12월)에서 직전월(2·5·8·11월) 중심으로 변경
- 원금이자분리채권 조성종목 지정예고제, 지정기준 등 관리 프로세스를 명정

□ 용어 정비(제9조의2, 제84조의2, 제132조)

- 한국은행이 정하는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 공휴일 외의 기타 휴장일인 경우에도, 이자락 등 조치시 직전 영업일을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로 적용함을 명확화

□ 조성호가 이행의무 정비(제99조의3 제2항, 별표 4)

- 기본 조성종목수 이행여부 판별시 기본 조성시간 요건을 충족한 조성종목에 한해 산정함을 명확화

나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4/10/15 개정 · 2024/10/1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회원의 복수 위반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,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회원의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(제15조의2 제1항, 제15조의2 제2항)

- 하나의 원인행위로 복수의 규정·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
 - 가장 중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복수의 원인행위로 복수의 규정·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
 - 위반행위 각각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는 방식으로 적용
 - 예 : i) 허수성호가와 가장-통정성매매 관련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

- ii) 무차입공매도,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및 업틱룰 위반 등 2개 이상의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
- 복수의 원인행위로 복수의 규정·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한 가중 방법 마련
 - 위반행위 각각의 조치에 대하여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중한 사항에 해당하는 하나에 대해서만 가중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□ 회원 제재금 부과 기준 정비(별표 1 제4호 다목)

-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복수 위반행위의 각각의 조치에 대하여 병과한 회원재제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규정 상 회원재제금 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규정 신설

3) 관련 규정

-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(2024/10/15 개정 · 2024/10/16 시행)
 - 제24조의2 제1항, 제2항
-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시행세칙(2024/10/15 개정 · 2024/10/16 시행)
 - 제25조의2 제1항, 제2항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